

고 시

서울특별시 종로구고시 제2014-88호

돈의문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(변경)인가 고시

1. 서울특별시 종로구고시 제2012-21호(2012.4.6)로 관리처분계획인가 및 종로구고시 제2014-16호(2014.2.14)로 사업시행변경인가된 종로구 교남동 62-1번지 일대 돈의문 도시환경정비구역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49조제2항 규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인가하고, 같은법 제49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2.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청 도시개발과(02-2148-2692)에 비치하여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

2014년 10월 10일

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

1. 사업의 종류 및 명칭
 - 가. 사업의 종류 : 도시환경정비사업
 - 나. 사업의 명칭 : 돈의문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
2. 정비구역 위치 및 면적

구 역 명	위 치	시행면적(㎡)
돈의문1구역	종로구 교남동 62-1번지 일대	152,130.5 (㎡) (존치 : 7,723.1)

3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 - 가. 사업시행자 : 돈의문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최현영
 - 나. 주된사무소의 소재지 :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독립문공원길 13, 상가동 202호(현저동, 독립문극동아파트)
4. 관리처분계획인가일 : 2012년 4월 6일
5.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의 요지
 - 가.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등 건축계획

용 도	대지면적	동수	층 수	세대수	건 축 연면적	비 고
주택	소계	92,019.1000	30		2,366	339,983.5700
	분양	79,253.0000	25	지하5층 ~ 지상21층	1,870	291,648.9600
	임대	12,766.1000	5	지하2층 ~ 지상19층	496	48,334.6100
상 가	5,498.9000			297	23,870.1200	

나. 분양또는 보류지의 규모 등 분양계획

－ 건축시설

공급대상	주택규모별(전용면적기준) 공급세대수												상가 면적 (세대)
	계	33	34	37	45	46	59	77	84	101	116	138	
계	2,366	16	232	91	75	204	388	85	1,031	130	93	21	297
토 지 등 소 유 자	824	5		7	16		248	71	352	65	46	14	94
보류시설	10			1			2		4	1	1	1	2
일반분양	1,036	11	－	83	59		78	14	675	64	46	6	201
임 대	496		232			204	60						

－ 체비시설(대지)

시설구분	획 지	면 적	비 고
종교시설	획지1-5	968.80	구역내 교회
	획지1-6	702.40	구역내 사찰
공공청사	획지1-7	2,496.50	경찰박물관, 순찰대
	획지1-8	915.60	주민자체센터
	획지1-9	599.50	파출소

다. 신설 또는 폐지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(생략 - 도시개발과 비치)

라. 기존 건축물의 철거 예정시기 등 : 변동없음

6. 기타 관계도서 : 생략(종로구청 도시개발과 ☎2148-2692 및 돈의문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에 비치 ☎720-5834). 끝.